

○朴英淑議員 朴英淑議員입니다.

존경하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저는 李兌榮博士를 會長으로 하고 있는 90餘
個 女姓團體가 연합해서 구성된 家族法改正을
위한 女姓團體가 제출한 請願의 紹介議員의
한사람입니다.

그 請願內容은 앞서 提案說明을 하신 金長
淑議員님이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고
請願의 提案說明도 油印物로 대개 配布가 되
었기 때문에 모든 것은 그것으로 대신하기로
하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싶은 말씀은 오랫동안
안의 女姓들의 숙원이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民主化過程에 있어서 이 일만
은 외면할 수 없다는 그러한 歷史的인 使命
을 다시 환기시켜 드리면서 거기에 副應하도
록 이번에 이 改正案 原案대로 통과시켜 주
셨으면 하는 간절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提案說明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 請願의 概要

가. 請願人

住所 서울特別市西大門區大新洞84-4

姓名 李兌榮外 51,630人

나. 紹介議員

朴英淑·金長淑議員

2. 請願紹介意見의 要旨

가. 現行 家族法은 憲法 第11條와 第36條
에 依하여 모든 領域에서 性別에 依한
差別을 받지않고 婚姻과 家族生活에서 個
人の 尊嚴과 兩性平等을 國家가 保障한다
는 條項에 違背되고 女性의 權益向上을
制約하고 있으므로 改正되어야 함.

나. 現行 家族法은 50年代에 制定된 法律
로서 現實과 乖離가 심하며 民主化에 沮
害要因이 되고 있으므로 兩性平等의 憲法
理念을 實現하여 家庭의 幸福과 社會의
發展을 위해 改正되어야 한다는 立場에서
家族法改正請願을 紹介함.

3. 請願의 要旨

가. 現行 民法中 親族·相續編은 憲法에
明示되어 있는 人間의 尊嚴性 法앞에 萬
人平等理念 家庭에서의 男女平等精神에 違
背되고 있으므로 民法規定을 憲法理念에
맞도록 改正하여 民主家庭과 正義社會實現
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要望하는 請願임.

나. 非民主的이고 不平等한 民法規定으로서
改正해야 할 事項

- (1) 男系血統中心의 戶主制度
- (2) 親族範圍에 있어 父系와 母系의 差別規定
- (3) 同姓同本 婚姻禁地 規定
- (4) 夫婦離婚時 財産分割 請求權規定의 未備
- (5) 未成年子인 子女에 대한 父의 親權 優先 認定規定
- (6) 相續權 差別適用規定 등임.

○朴英淑委員 朴英淑委員입니다.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平民黨이 89年11月10日 오늘로써 1年 1個月4日前에 發議한 託兒福祉法案과 90年11月20日 오늘로써 24日前에 民自黨이 發議한 嬰幼兒의保護教育에관한法律案을 小委員會에서 審議하는 과정에서 保社部와 民自黨은 줄속으로 강행처리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審議와 여론수렴없이 小委員會 개최 이틀만에 그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다섯 여섯시간 남짓한 小委活動으로 常任委 全體會議에서 表決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立法院가 通法府로 전락하여 行政府의 시녀로 봉사해왔던 5共 維新政權 때의 치욕을 또 다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우리 平和民主黨이 託兒福祉法案을 發議한지 1년이 지난 다음에야 비로소 民自黨이 代案을 發議하였다면 좀더 겸허한 자세로 여론을 수렴하면서 진지한 토론과 설득을 통해 與·野합의로 이 法案을 처리하는 것이 國民들의 지지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따라서 우선 國會 차원의 公聽會를 열어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후에 두 法案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최선의 代案을 마련하자고 우리黨은 提案했습니다. 그러나 民自黨은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 제의를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단 한 자도 우리 黨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경직된 자세를 小委에서 보여 주었습니다.

民自黨 委員 여러분!

앞으로 한달후에 臨時國會가 있습니다. 우리 平民黨은 託兒福祉法案을 發議해 놓고 1년이 다 가는데 여러분들은 한달도 못 기다립니까? 다시한번 巨興의 횡포에 분노를 느끼면서 우리黨이 왜 來年 1月の 臨時國會 때까지 신중한 검토와 여론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지 그 이유를 平民黨과 民自黨의 쟁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本委員은 어제 小委員會에서 1독회가 끝난 후 축조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託兒制度에 관한 平民黨과 民自黨의 기본정책의 차이를 조정하자고 주장했으나 民自黨側은 단 한가지도 양보할 수 없다고 협상자세를 거부한 쟁점들입니다.

첫째 平民黨案 第3條 4條와 民自黨案 第3條에서 규정하고 있는 탁아보육에 관한 기본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憲法 第4條 第1項은 모든 國民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條項에 의거 國民은 國家에서 託兒保育請求權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 憲法 第34條 第2項과 第3項에서 國家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와 여성의 복지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國民의 託兒保育 行政需要에 상응하는 託兒保育政策을 수립하고 집행할 책임이 國家에게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民自黨과 保社部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平民黨案 第5條부터 19條까지 11個條項과 民自黨案 第7條부터 35條까지 16個條項에 걸쳐 규정하고 있는 國·公立託兒所와 民間託兒所간의 관계정립에 관한 문제입니다. 國·공립탁아소가 없는 지역에서는 민간탁아소가 그 역할을 대신 담당하면서 國·공립탁아소와 민간탁아소가 한 지역에 같이 있을 경우에 둘중 어느쪽을 선택할 것인가는 주민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사항이지 政府가 法으로 강제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탁아소가 부족한 현실에서 시설과 자격기준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託兒政策이 후퇴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國·公立託兒所의 숫자는 탁아보육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등 저소득층 아동만을 탁아보육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은 國民基本權 託兒保育請求權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만 國家財政의 형편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아동부터 먼저 보호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政府가 약속한 3萬2,000個의 國·공립탁아소를 모두 설치하는 95년까지는 소규모 민간탁아소의 중간역할이 필요하므로 이들의 탁아보육활동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정한 시설 자격기준을 갖추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육성하는 것이 합리적인 託兒政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萬2,000個의 국·공립탁아소가 설치 완료되는 95년까지 농어촌 도서벽지 도시저소득층 밀집주거지역의 맞벌이 부부를 위해 필요한 보호아동 30名미만의 소규모 민간탁아소인 家庭託兒所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民自黨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오늘 修正案 좀 변경이 있습니다마는 어제 기준으로 이 修正案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못 했습니다. 그러나 충분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民自黨이 주장하고 있는 시설기준과 종사자 자격기준 등의 제한규정을 비롯하여 허가 승인 규정 폐지 정지 취소규정 보고 검사규정과 위반시 벌칙규정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 조치입니다.

셋째 平民黨案 第9條 17條와 民自黨案 8條부터 附則 3條까지 5個 條項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탁아소의 法的지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직장탁아소에 관한 男女雇傭平等法의 규정과 託兒保育法의 규정은 상호보완관계에 있기 때문에 시설 자격기준등 직장탁아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기본원칙은 託兒保育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 施設 등의 세부기준과 運營方法에 관해서는 事業場의 특성에 따라 勞使合意로 결정하고 이에 대한 指導 監督도 市長이나 郡守 보다 地方勞動事務所의 勤勞監督官이 담당하는 것이 託兒政策의 실효성은 물론 豫算執行의 효율성면에서도 훨씬 합리적인입니다. 그리고 職場託兒所의 설치 운영이 단독으로 곤란한 사업자는 地域託兒所를 이용할 수 있는 託兒保育手當을 지급하거나 둘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託兒保育施設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직장탁아소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託兒政策입니다.

넷째 民自黨案의 第4條로부터 30條까지 8個 條項에서 규정하고 있는 託兒保護와 教育機能간의 關係定立 問題입니다.

오늘의 우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론과 현실론 중 양자 택일한 事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託兒保護의 量的 消極的인 기능과 嬰幼兒教育의 質的 積極的인

기능은 相護補完關係에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823名의 대상아동을 保護 教育할 수 있는 託兒保育施設의 數가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그리고 國家의 財政形便으로 미루어 볼 때 教育의 質的인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80年 5共 출범 당시의 새마을 幼稚園政策과 같은 託兒政策의 후퇴를 가져올 위험이 크다는 것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선 시급히 요구되는 託兒保育施設을 확충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보육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政府가 약속한 3萬2,000個의 託兒所를 설치 완료하는 95년까지 託兒政策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託兒保育의 教育機能을 강조하는 내용들은 努力義務條項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상과 현실을 다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本委員은 주장합니다만 民自黨은 전혀 타협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平民黨案 第8條 第2項이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 건설시 託兒施設 설치를 위해 託兒保育法에 義務規定을 두는 것과 住宅建設 關係法令에서 託兒施設 設置義務를 규정하는 것은 별개의 영역이므로 立法政策面에서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95년까지 3萬2,000個의 公共託兒所를 설치 운영하려는 政府計劃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오히려 共同住宅 團地의 託兒施設 義務規定은 必修條項인데도 保社部와 民自黨은 왜 이것을 建設關係法令에만 미루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섯째 寄附金品의 任意募集을 규제하는 現行法이 있기 때문에 施設 資格基準에 미달하는 小規模 民間託兒所는 6個月 이내에 申告를 해서 3個年 이내에 資格을 갖추라고는 합니다마는 이러한 施設 資格基準에 미달하는 小規模 民間託兒所에 지원·육성을 위해서 寄附金의 制度를 보장하지 않는 한 어떻게해서 이들이 그 規定에 도달할 수 있겠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寄附金의 수령에 관한 허용근거를 託兒保育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平民黨案 第20條에 규정하였는데 이것 역시 民自黨측의 단 한자도 우리 平民黨案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경직된 태도로 일관하므로 與·野合意

에 의한 保社委 單一案 마련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끝으로 本委員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平民黨은 이미 작년 11월에 託兒福祉法案을 發議했고 民自黨은 1年 2個月이 지난 뒤에야 嬰幼兒保護·教育에 관한 法律案을 代案으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小委員會에서 民自黨과 保社部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초 保社部 입장은 현행 兒童福祉法 施行令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託兒立法에는 반대했다 그런데 지나고보니 民自黨의 주장이 공감이 가게 되었다 그래서 平民黨이 발의한 託兒福祉法案의 내용을 대폭 수용했으니 별도의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은 필요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民自黨이 제출한 代案을 보면 託兒라는 용어를 모두 保育이라는 말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民自黨委員 여러분!

平民黨案을 이미 수용했으니 여론수렴이 필요없다고 해놓고 이름은 嬰幼兒保育法이라고 고쳤는데 그렇다면 民自黨은 平民黨法案에 이름만 바꿔서 代案으로 제출했다는 말입니까? 託兒이라는 말은 “탁”하고 아이를 맡기는 것 같아서 싫다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 保社部가 제출한 91年度 豫算案 說明書가 있습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託兒保護項目으로 事業概要에는 저소득층 맞벌이부부의 생업지원을 위한 탁아소 운영 경비내역에 託兒所新築 50個所 託兒所運營 및 改補修支援 탁아급식비 지원등 保社部는 “탁”하고 아이들 맡기는 것이 좋아서 이렇게 탁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까?

法은 상식에서 출발합니다. 民自黨측의 말대로라면 오히려 6·25때 孤兒園을 연상시키는 보육시설이라는 말이 우리 부모들의 정서에 더 많은 거부감을 준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랍니다. 우리 平民黨은 내용만 제대로 들어있다면 형식이야 아무래도 상관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民自黨이 구차한 이유를 내세우면서 굳이 託兒라는 말을 쓰지 않으려는 저의가 혹시 平民黨의 託兒福祉法案을 의식

한 것이라면 이것은 與黨의 품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年前에 우리 平民黨이 法案을 發議할 때는 필요없다고 거들며 보지도 않다가 이제와서 슬그머니 바꿔치기 하는 것이 巨大與黨의 할 일입니까?

本委員의 反對討論을 마치면서 다시한번 民自黨委員 여러분에게 촉구합니다. 政府가 犯罪와 無秩序를 뿌리뽑겠다고 犯罪와의 戰爭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범죄와의 전쟁은 구실에 불과하고 사실은 第2의 公安局을 조성하여 5共 維新時節로 회귀함으로써 民主化를 갈망하는 國民들의 욕구를 政府는 힘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자리도 바로 그러한 자리입니다. 多數의 議席이라는 힘만 믿고 少數野黨의 國民의 의견을 짓밟으면서 政府와 民自黨은 國會에서 까지 戰爭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對話와 타협을 강조하면서 法案을 審議하는 小委員會에서는 速記錄에 남지 않기 때문인지 스스로 한 말을 다시 트집과 오만과 편견으로 일관했습니다. 民自黨委員 여러분! 90年12月14日 이 시점에서 3萬2,000個의 탁아소를 필요로 하는 82萬餘名의 託兒保護對象 兒童을 위해 좀더 신중하게 輿論을 수렴하기보다 表決處理를 강행하는 다수의 횡포야말로 바로 國民을 상대로 한 전쟁이 아닙니까?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최소한 한달정도의 여유를 갖고 공청회라도 한번 열어서 與野合意를 위해 성의를 보이는 것이 진정한 議會民主主義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다시 託兒法通過를 줄속하게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反對討論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申英順委員 申英順委員입니다.

방금 朴委員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本委員은 嬰幼兒의保護·教育에 관한法律案을 찬성하는 취지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밝혀 두고자 하는 것은 本委員이 소속하고 있는 民主自由黨에서는 이 法律案에 대하여 금년초부터 수차례 걸쳐 討論會와 公聽會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朴英淑委員께서도 한달 넘어진 지난달 2일에 한국 부인회가 개최한 탁아대토론회에도 참석하신 것으로 알고 있으며 本委員 자신도 이 法律案을 준비하면서 각계각층의 관계 인사들을 수없이 접하며 그들의 의견을 듣는 등 가능한 한 모든 통로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 이를 客觀的인 입장에서 조정 반영하였음을 말하고 싶습니다. 더욱이 이 法律案은 이미 지난 11月20일에 國會에 제출되었지만 그동안 國會가 공전됨에 따라 이 法律案에 대한 審議가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審議日數는 며칠에 불과하였지만 그 준비기간과 준비과정을 고려하면 이 法律案은 어느 法律案의 審議期間보다 결코 줄속으로 制定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法律案에 대한 批判論者들은 具體的인 이 修正 法律案의 내용은 읽어보지도 않은 채 막연히 규제 일변도의 내용이 라든가 백지위임이라고 비판하는등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하고 있음은 유감이 아닐수 없습니다.

本委員은 이 法律案이 國會에 제출한후 각계에서 주장된 問題點과 특히 託兒法案審查小委員會에서 平民黨측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여러 委員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서 볼 수 있듯이 상당부분을 과감히 수용하고 반영하였습니다.

그 具體的인 말씀은 朴炳善小委員長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습니다.

先輩 同僚委員 여러분! 이미 탁아는 과거의 인식과 관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과거의 託兒事業은 단순한 社會的인 서비스로 인식되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대중 社會의 公益事業으로 변했습니다.

둘째, 과거의 託兒는 低所得層 가정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오늘날은 필요로 하는 모든 계층의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과거의 託兒施設의 이용자는 受領人 이거나 受惠者였지만 오늘날의 인식은 消費者인 동시에 후원자입니다.

넷째, 과거의 託兒施設은 公共基金으로 이루어졌지만 오늘날은 民間 保育施設이 있어 필요한 費用을 보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 託兒施設의 許可制度는 兒童을 위한 국가의 法的 規制裝置였지만 오늘날은 부모들이 보다 나은 託兒施設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비자 保護制度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託兒에 대한 과거의 인식은 託兒 프로그램을 통해서 빈곤 가정에서 요구하는 모든 서비스를 전달했지만 오늘날은 빈곤가정의 욕구뿐만 아니라 社會階層과 무관하게 모든 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여섯째, 과거의 託兒施設에 대한 인식은 學校나 社會的인 서비스 체계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었지만 오늘날에 있어서는 모든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託兒 시스템을 公營 또는 私立機關에 의해 운영되는 家庭託兒幼稚園 중일반등 다양한 종류의 보호형태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과거의 탁아는 단순히 탁아라는 개념과 어휘로 한정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를 든다면 맹인을 시각장애자로 부르며 판매를 마케팅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듯 단순한 託兒에서 嬰幼兒의 보호와 교육이란 包括的인 개념으로 그 어휘가 성숙되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託兒事業은 단순한 보호의 차원을 넘어 보다 유익한 教育的 經驗을 제공하는 社會的 體制입니다. 託兒事業은 원하지 않는 아이의 탁아를 강제하는 制度가 아니라 託兒를 필요로 하는 사람만을 위한 普遍的인 사회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就業母 家庭이 아니더라도 어머니의 자녀 양육의 책임을 분담해주거나 보충해 주고 早期教育 經驗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託兒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現代的인 의미의 託兒事

業과 託兒施設 및 託兒制度를 대상으로 우리는 託兒의 효과를 다시금 재검토 한 制度와 法이 바로 이 法案입니다.

託兒는 이제 더 이상 가난한 맛벌이 부부나 문제가 있는 자녀를 대신 맡아서 보호만 하는 소극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託兒는 우리 社會와 家庭 전체를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필요한 제도가 되고 있듯이 이 法案은 託兒를 필요로 하는 직장과 가정의 모든 사람을 지원하고 託兒施設者에 대한 稅制惠澤까지도 포용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託兒가 福祉나 教育이나로 양분해서 논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低所得層 자녀에게는 福祉가 우선이며 중산층 자녀는 教育이 우선이라는 아주 그릇된 편견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託兒는 그 概念에 있어서나 기능면에서 福祉와 教育으로 양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福祉와 教育은 統合 概念과 기능으로 인식되어야 하듯이 이 法案은 社會계층이나 배경에 관계없이 運營者가 누구인가에 관계없이 託兒가 필요한 兒童은 누구나 동등하게 양질의 託兒서비스를 받도록 함으로써 低所得者의 託兒支援은 물론 家庭福祉의 증진을 꾀한 法律案입니다. 1年 2年을 두고 논쟁하고 검토해 보아도 託兒事業은 兒童의 요구 어머니와 가족의 요구 그리고 지역사회 의 요구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며 또한 利害關係가 상반되는 입장의 學界 施設機關 政府 部處간 혹은 일부 國民들에 이르기까지 각 각의 關聯者들은 독립된 것이 아니라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 받는 관계에 있음으로 해서 託兒事業이나 託兒프로그램은 다른 어떤 福祉事業과 教育事業보다도 그 대상이 복잡하고 따라서 내용도 복합적일 수 밖에 없어서 끝없는 논쟁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先輩 同僚委員 여러분!

立法過程에서 어떻게 修正되었으며 수정된 具體的인 내용조차 적시하지 않은채 무조건 拙速이니 서둘러 말라는 등의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며 나아가서는 무책임한 비판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한 或者는 이 法律案이 규제위주의 내용으로 그 立法形式도 大統領令이나 保社部

令으로의 委任事項이 많다고 하나 이 또한 다른 立法 예와 비교하여 볼 때 결코 무리하거나 지나친 내용이 아니라고 보며 保育事業이 어느 정도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는 최소한도의 規制와 감독이 당연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委員님 여러분들께서는 이 法律案을 託兒法案 審議 小委員會에서 審議하여 修正·議決한대로 滿場一致로 贊成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補充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朴英淑委員님께서 저희 與黨에서 兒童福祉 法施行令으로 託兒事業을 할 당시 이미 저희보다 먼저 託兒制度福祉法을 發議하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가 法을 反對한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우리 政府에서 兒童福祉法施行令 改正案을 갖고 託兒事業을 막 시작한 지 두서너달 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本委員은 어떤 발언을 했는고 하면 한 1·2年동안 이 政府가 이 法을 갖고 事業을 하는 것을 두고 보다가 여기에서 생기는 長短點을 파악하고 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지 결코 託兒事業을 反對했다든가 託兒法을 反對한 것은 아닙니다. 反對한 이유는 반드시 저는 더 두고 託兒事業이 다양하고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좀더 여유를 두고 여기의 長短點을 가려내기 위해서 지연을 시켰던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이 자리에서 해명해 드리겠습니다.